

보도자료 2015. 3. 2.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양형위원회
	담당자	운영지원단장 안종열 (☎ 02-3480-1924)
	공보관실 ☎ 02-3480-145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주요내용】

■ 식품·보건범죄의 특별가중양형인자에 아래 항목 추가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 ‘유해 식품 등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 마약범죄의 특별감경양형인자에 아래 항목 추가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양형위원회는 2015. 3. 2. 10: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2차 전체 회의를 열어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심의·의결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 배경 및 의의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 7. 1. 이후 식품범죄 적용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 ⇒ 법률 개정사항 반영
 - 기존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개선
-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배경 및 의의

- 마약류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유형의 정의’ 부분 수정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감정인자로 반영

①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개정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신설
- 우수표시품 허위 광고행위 처벌규정 신설
-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 등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규정 신설
- 유해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가중처벌규정 신설
- 일부 범죄에 대한 법정형 변경

■ 허위표시 유형 부분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수정
 - 신설된, 상습범과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포함
 -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 개정되어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가 없어진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위반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서 제외
- 양형인자 관련
 -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설된 ① ‘5년 이내 재범’, ② ‘상습범’ ⇒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킴
 -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에 포함시킴
 -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시킴(의약품 허위 표시와 관련한 처벌법규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그리 높지 않고, 화장품의 경우 위와 같이 법정형이 하향 개정된 점 등 참작)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특별감경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특별감경인자)’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수정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부분

-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1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2유형)이 대상임
-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 관련
 - 가중처벌 규정으로 신설된 ‘5년 이내 재범’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에 포함시킴
- 양형인자 관련
 - 신설된 ‘유해식품 판매 등 행위 등’에 대한 ‘5년 이내 재범’ ⇒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시킴(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최하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사형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다른 법률위반의 경우보다 법정형이 현저히 높은 점 반영)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특별감경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

②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특별감경인자에 포함시킴
 - 현행 양형기준상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에 대하여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되는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의 경우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실무상 투약·단순소지 등 범행과 관련된 매수·수수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함

③ 향후 일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15. 3. 4. ~ 3. 27. :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

※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5. 4. 13.(월) 16:00 개최 예정

⇒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

I. 식품·보건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개요

-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 7. 1. 이후 식품범죄 적용 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되어 조문이 변경되거나 구성요건이 신설되었으며, 법정형에도 일부 변동이 있었음
-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기존의 식품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설정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
- 법률변경 사항이 있는 ‘허위표시’ 대유형,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대유형 중 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및 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방안 검토

① 신설된 구성요건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 및 법정형이 하향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대상 제외 여부

② 변동된 법정형의 양형기준 반영 여부 및 그 구체적 방법

③ 법정형 체계에 맞지 않는 기존 양형기준의 문제점 등 보완

■ 개정법률의 주요 요지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조리 판매·제공자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법 제15조) : 3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제16조의2) : 10년 이하 징역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종래 적용대상에 따라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이원적으로 규

울되고 있던 것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통합

○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 처벌규정 신설(제119조 제1호의2) : 3년 이하 징역

(3) 축산물 위생관리법

○ 허위표시 유형

-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등을 늘리는 행위(가축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 3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② 그 외 내용의 허위표시 :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①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 유해 축산물 제조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4) 식품위생법

○ 허위표시 유형

-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3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② 그 외 내용의 허위표시 :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①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이상 ~ 7년 이하 징역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 유해식품 제조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이상 ~ 7년 이하 징역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허위표시 유형

-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② 그 외 내용의 허위표시 : 종전 법정형 유지(5년↓)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①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 유형

- 위해건강기능식품 제조 등 행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재범 처벌규정 신설

위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6) 화장품법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표시된 화장품 판매행위에 대한 법정형 하향 : 3년 이하 징역 ⇒ 1년 이하 징역

2 허위표시 유형

■ 양형기준의 적용범위의 수정

○ 상습범,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 포함

- 기본적 구성요건이 이미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음

- 해당 범죄의 증가를 억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 고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중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 조항 : 포함

- 현행 식품범죄 양형기준은 우수표시품에 대한 허위‘표시’행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 삼고 있음

- 우수표시품 허위‘광고’행위 또한 기망성을 내포한 행위로서 허위표시행위 구성요건과 입법취지가 유사하며, 동일한 조문에 배치되어 있고 법정형도 동일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 제외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됨

- 허위표시 유형의 형량범위는 대부분 화장품법의 법정형 상한인 1년을 초과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위반죄를 기존의 양형기준 형량범위에 포섭시킬 수 없음

■ 형량범위 또는 양형인자의 수정

○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법정형 상한이 10년으로 상향됨

- ‘5년 이내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과의 체계정합성, 재범과 초범의 처벌수위를 달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단순한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에 대한 5년 이내 재범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앞서 본 이유와 같음

○ **상습범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설정(일반범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 상습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무겁게 정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의 법정형이 상향됨(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징역)
- 법정형 상향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양형인자 설정과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 양형인자 수정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허위표시 유형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법정형 차이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를 기본영역으로 하고,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들의 구성요건들에 대하여 감경영역에서 출발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형량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
- 법 개정예 따라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고, 법정형이 더욱 다양화됨으로써 종전의 양형인자 표현을 그대로 둘 경우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적용상의 혼란이 우려되어 수정함

○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 양형인자에서 제외**

- 현행 양형기준에는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되어 있음
 -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을 양형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은 앞서 살펴봄 ⇨ ‘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해야
 -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용되는 구성요건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위반
 - ①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미비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 ②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한데,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연적 이유 없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양형인자 수정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 공범이 역할 분담한 유형에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인자로 수정

■ 수정된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의약품·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u>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u>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u>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u> ○ <u>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u>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③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1,2 유형

■ 양형기준 적용범위의 수정

○ 재범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 포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재범 처벌규정이 각 신설됨

■ 형량범위 또는 양형인자의 수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 (1, 2유형)

-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인 식품위생법 위반 등과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현행 양형기준상 동일한 유형의 구성요건으로 포함되어 있고, 양형기준의 형량구간이 법정형이 높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법정형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와 같이 형량 구간 조정의 필요성 있음

○ ‘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에 대한 5년 이내 재범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위해식품, 위해건강기능식품, 썩은 축산물 등의 판매 등 죄에 대해 5년 이내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신설됨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양형인자
수정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앞서 본 허위표시 유형의 검토내용과 동일

■ 수정된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u>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u>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u>	○ 중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u>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u>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 의약품인 경우 (1, 4, 5유형)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 타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II.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주요 내용

①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개요

- 현행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 양형기준 의결 후인 2011.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 개정(2012. 6. 8. 시행)되는 등 마약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그 밖에 현행 양형기준 시행 후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개정 법률

- 마약류관리법(2012. 6. 8. 시행)
- 화학물질관리법(2015. 1. 1. 시행)

② 양형기준 수정안

○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의 반영

- 벌칙 조항 각 호의 배치 변경, 정의 조항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임시마약의 반영 부분은 현행 양형기준 중 유형의 정의 부분을 변경하면 족함
- 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대상범죄 및 유형분류,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음

○ 마약류관리법(2012. 6. 8. 시행)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를 특별감경인자로 신설함

- 현행 ‘매매·알선 등’ 대유형의 양형기준상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에 대하여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의 경우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실무상 투약·단순소지 등 범행과 관련된 매수·수수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함

③ ‘매매·알선 등’ 대유형의 수정된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u>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u>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III. 향후 일정

○ 관계기관 의견조치

- 2015. 3. 4. ~ 3. 27. : 수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취

※ 다음 위원회 회의는 2015. 4. 13.(월) 16:00 개최 예정

⇒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예정